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4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7.

발 의 자: 박홍배·김태선·박 정

서삼석 · 안호영 · 박해철

한민수 • 박성준 • 김현정

서영교 • 박정현 • 민병덕

김주영 · 김남근 · 이연희

정진욱 • 한준호 의원

(17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기후변화로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위험기상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수치예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함. 우리나라는 (재)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('11~'19년)과 (재)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('20~'26년)을한시적으로 수행하여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나, 한시적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제한적이며, 사업 종료 후 그동안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전문가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사장될 가능성이 큼.

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산업 · 경제발전에 기여하

는 공공재로서의 첨단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상시적 조직인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설립하여 수치예보기술의 지속적 개발·개선 및 환경,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활용·보급을 전담하게 하고자 함(안 제17조의3 신설).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제17조의4 및 제17조의 5로 하고, 제1 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3(한국수치예보기술원의 설립)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지는 기상현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수치예보모델의 예측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한국수치예보기술원(이하"기술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-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다.
- ④ 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을 둔다.
- ⑤ 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상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⑥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수치예보 기술 연구
- 2. 수치예보 기술 활용 · 보급에 관한 연구
- 3. 수치예보 관련 국제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 국제협력

- 4.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⑦ 정부는 기술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- ⑧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재단법인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의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「민법」제32조 및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(이하 "구법인"이라 한다)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수치예보기술원(이하 "신법인"이라 한다)이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·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,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, 직원의 고용관계는 신법인이 승계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

- 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-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(公簿)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.
-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원은 신법인의 임원으로 보며,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.
- ⑥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행위로 본다.
- ①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신법인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7조의3(한국수치예보기술원의 설립)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지는 기상현상의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수치예보모델의예측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한국수치예보기술원(이하 "기술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. ③ 기술원은 건인으로 한다. ④ 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임직원을 둔다. ⑤ 기술원은 지관으로 정하는바에 따라임직원을 둔다. ⑤ 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기상청장의인가를받아야한다. ⑥ 기술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수치예보기술 연구 2. 수치예보기술 활용・보급에관한 연구

- 3. 수치예보 관련 국제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 국제협력
- 4.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사업
- ① 정부는 기술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 ③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<u>제17조의4</u>·<u>제17조의5</u> (현행 제1 7조의3 및 제17조의4와 같음)

<u>제17조의3</u> · <u>제17조의4</u> (생 략)